

영남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정 2010. 2.23. 교무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 및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영남대학교 (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소속 교직원 등의 창작 발명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처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대학 및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 반도체배치설계, 컴퓨터프로그램, 품종, Know-How 등의 신 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우리대학교 또는 교외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우리대학교의 물적·인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제1호의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발명으로써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 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 나.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 다. 기간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
4.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5. “교직원 등”이라 함은 우리대학교의 교원, 직원, 학생 및 당해 창작에 기여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전담사무소”라 함은 대학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관리를 위해 업무를 함께하는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사무소를 말한다.
8.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라 함은 교직원 등의 발명을 국내외에 출원·등록을 하고, 당해 지식재산권을 유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9. “지식재산권의 처분·보상”이라 함은 기술의 수요자에게 기술이전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우리대학교의 지식재산권 취득·관리·처분·보상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식재

산권에 관한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발명의 신고 및 출원·등록

제4조(직무발명의 신고)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교직원 등이 공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에는 대표발명자 1인을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발명신고서 1부(별지서식 제1호)
2. 양도증 1부(별지서식 제2호)
3. 발명의 내용 설명서 1부(별지서식 제3호)

제5조(권리의 승계 및 통지) ① 산학협력단은 제4조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 전담사무소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해당 발명에 관한 직무발명 여부 및 등급 심의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월 이내에 그 발명을 한 교직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공동발명의 경우는 공동발명의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본항의 통지에 갈음한다.

③ 외부수탁연구로 인한 직무발명의 경우 당해 연구협약서 및 지침에 따라 당해 직무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④ 우리대학교 교직원 등이 아닌 공동발명자인 제3자가 그 권리를 양도할 경우에는 그 권리의 지분도 승계할 수 있다.

⑤ 통지의 방법은 문서에 의한 방법 외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다.

제6조(승계시점 등) ① 산학협력단이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산학협력단이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직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출원 등)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체없이 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표발명자와 협의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이 외부기관 및 단체와 공동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완료 후 별도의 지분합의

를 한다.

제8조(비용부담) ①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이 외부기관 및 단체와 공동명의로 출원 및 등록 등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권리설정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9조(등록의 유지 등) 지식재산권 등록유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자유발명) 자유발명에 대하여는 발명자로부터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를 우리대학교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및 보상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문서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22조 규정에 의한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한 발명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한다)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12조(설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받은 법학계열, 상경계열 교원각 1인과 이공계열 교원 4인, 기타계열 교원 1인, 창업보육센터장, 외부 전문가 2인 등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 유고시 산학협력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 및 제8조의 해외출원여부 및 그 지원범위

2. 제11조 제1항의 이의신청의 수용여부

3. 제21조의 기술료 징수를 위한 조치

4. 본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5.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학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15조(심의방법)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불참하는 위원은 위임장(별지서식 제4호)을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전담사무소)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이전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사무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 4장 지식재산권 실시·처분 및 보상

제17조 (사전협의) 우리대학교가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그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실시권 설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협력단은 당해 발명자 등의 협조를 받아 본 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하여 검토한다.

제18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을 직접 실시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실시권의 허여 등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한 수입 중 선급정액기술료는 산학협력단 대표계좌로 입금 후 30일 이내에 보상을 실시하며, 경상기술료는 당해 기술을 직접 실시하는 실시자의 회계연도와 학교의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보상을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명자에게 지급할 처분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전직 또는 퇴직시의 보상금)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 의한다.

제20조(사망시 보상금의 승계)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민법상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1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의 모방으로 인하여 당해 지식재산권이 무효가 된 경우, 발명자 또는 상속인은 지급 받은 지식재산권의 처분 보상금을 대학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대학이 필요로 하는 경우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 등의 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에 관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② 발명자의 퇴직 또는 사망 이후 발명자와 상속인은 그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대학의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의무)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제25조(제재조치) 산학협력단은 교직원 등이 제4조 제1항의 신고의무 등 본 규정을 위반한 사

실을 알게 되거나 접수하였을 경우에 산학협력단은 당해 교직원 등을 상대로 관련법령 및 우리대학교의 내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당해 교직원 등을 향후 3년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6조(업무관장) 본 규정에서 정한 지식재산권 관련업무는 산학협력단 관련부서에서 관장한다.

부칙(2010. 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 및 기술이전의 보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일 전에 국내외 출원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건은 영남대학교 직무발명보상규정(개정 2005. 9.13. 교무위원회)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일 전에 계약이 체결된 기술이전의 보상은 영남대학교 직무발명보상규정(개정 2005. 9.13. 교무위원회)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영남대학교 직무발명보상규정(개정 2005. 9.13. 교무위원회)에 의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회하고 제14조의 심의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별지서식 제1호)

발명 신고서

영남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 의거, 아래의 발명을 신고하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학교가 승계할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년 ____월 ____일

신 고 자 : _____ (인)

1. 발명의 명칭				
2. 발명의 영문명칭				
3. 발명자 (초과시 별지사용)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연락처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연락처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연락처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연락처
	주소			
4. 발명의 종류	☐ 직 무 발 명 ☐ 자 유 발 명			
5. 출원권리	· 특 허 () · 실용신안 () · 기타 (내용 :)			
6. 사업화 가능분야 (구체적으로)				
7. 예상 수요기업	1.		2.	
8. 심사청구	· 출원동시 () · 추후결정통지 ()			
9. 논문/학회발표유 (공개여부)	· 발표안함 ()	· 발표함 ()	1. 발표일 : 2. 발표처 :	
10. 특허출원희망국	· 국내 () · 국외 (PCT / 개별국가 중 택일) · 개별국가 :			
11. 관련 연구과제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지원기관	
	과제번호		주관기관	
12. 6T분류	· IT() · BT() · ET() · ST() · CT() · NT() · 기타()			

※첨 부 : 관련 연구과제 협약서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양도증					
양수인	주 소	경북 경산시 대동 214-1번지			
	양수 기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성명				
다음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등록이 되어 발생하는 특허권을 상기 양수인에게 양도함.					
다 음					
발명의명칭					
____년 ____월 ____일					
양 도 인	성 명	지분(%)	소 속	주 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인)				
	(인)				
	(인)				
	(인)				
	(인)				

(별지서식 제3호)

발명내용설명서

● 기술개발개요

기술개발 내용	
요약서	
주요 색인어	

● 명세서

1. 발명의 명칭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2.1 기술분야

2.2 배경기술

2.3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 해결 수단】

【효과】

2.4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

2.5 산업상 이용가능성

3. 특허청구범위

3.1 청구항 1

3.2 청구항 2

3.3 청구항 3

4. 도면

4.1 도면의 간단한 설명

4.2 도면(색깔구분 필요한 도면 및 사진은 칼라 출력 필수)

【도 1】

【도 2】

【도 3】

【도 4a】

【도 4b】

5. 향후 사업화 전망 및 기대효과 (기술실시 가능기업의 기재요망)

위 임 장

본인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금번 년 월 일에 개최되는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의결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다수가 결정한 대로 따를 것을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200 200

위 원 : (서명 또는 인)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